

조사 결과 및 조치할 사항

구분	지적 및 조치 요구
한국문화 관광연구원	<p>○ 「직원 대외활동 지침」 제6조(활동의 제한)에 따라, 문광연 고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심사, 자문 등의 일회성 대외활동을 할 때는 연가 등을 사용해야 했으나, 총 3회에 걸쳐 출장으로 처리하여 「직원 대외활동 지침」을 위반함</p> <p>☞ 대외활동 관련 복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A에 대해서 “주의” 조치 요구(개인주의)</p> <p>○ 「직원 대외활동 지침」 제6조에서 근무시간 내의 대외활동은 개인 연가를 사용하되,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활동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출장처리가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로 ‘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요청 기관인 경우’를 병기하여, 해당 지침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가능토록 하였음</p> <p>☞ 향후 대외활동 관련 복무 관리가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「직원 대외활동 지침」을 「임직원 행동강령」과 동일하게 ‘정부 및 지방자치단체’로 한정하도록 개선할 것(통보)</p>